

# 희망저축계좌 | 사업 안내문

## 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○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|   |
|---|
| <p>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</li> <li>•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</li> <li>•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</li> <li>•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</li> </ul> |
|---|

## □ 가입 및 유지기준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**생계·의료 수급가구**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(단위: 원/월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1인 가구     | 2인 가구     | 3인 가구     | 4인 가구     | 5인 가구     | 6인 가구     | 7인 가구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준 중위소득                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           |
| 가입 기준*<br>(기준 중위소득 40%) | 1,025,695 | 1,679,717 | 2,143,614 | 2,597,895 | 3,022,688 | 3,422,381 | 3,806,060 |           |
| 유지기준                    | 소득상한      | 5,359,036 | 5,359,036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하한      | 100,000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
\*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%, 근로·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## □ 해지요건

| 구 분  | 해지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액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지급   | 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일부지급 | 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| • 만기성공금 지급<br>(근로소득장려금 적립<br>누적액의 5%+이자)       |
| 환수   | 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본인적립금과 이자<br>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<br>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 |
|      | 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## □ 유의사항

### ○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~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\*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\*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[참고] 2026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월 | '25.12.23(화)~'26.1.22(목) | 7월  | 6.23(화)~7.22(수)   |
| 2월 | 1.23(금)~2.23(월)          | 8월  | 7.23(목)~8.24(월)   |
| 3월 | 2.24(화)~3.23(월)          | 9월  | 8.25(화)~9.22(화)   |
| 4월 | 3.24(화)~4.22(수)          | 10월 | 9.23(수)~10.22(목)  |
| 5월 | 4.23(목)~5.22(금)          | 11월 | 10.23(금)~11.23(월) |
| 6월 | 5.23(토)~6.22(월)          | 12월 | 11.24(화)~12.22(화) |

### ○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희망저축계좌 I 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(최소 7일 전)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·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, 반드시 관할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기타 참고사항

-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관할구청과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